

광주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5005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는 2009. 2. 20. 주식회사 E(이하 ‘E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8. 1. 30. E카드로부터 25,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았다.
- E카드는 2021. 4. 21.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카드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D의 채무는 2021. 12. 1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품 목	대출일	대출원금	잔존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합계	연체이율
신용카드대금	2009.3.4.	10,660,000	10,660,000	5,426,746	1,287,246	17,373,992	17.15%
장기카드대출	2018.1.30.	25,000,000	24,999,975	10,749,808	2,798,832	38,548,615	15.90%
합 계			35,659,975	16,176,554	4,086,078	55,922,607	

- D는 2018. 2. 1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E카드는 2018년경 D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F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카드가 2018. 9월경 D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E카드가 그 무렵 D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설령 E카드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E카드가 2018. 9. 18.경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가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와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처분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D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 내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D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무효이다(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매도인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배우자 G은 대구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9279, 2009하면9279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9283, 2009하면928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② G은 그 명의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 8. 1.경 처남인 D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고,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J의 소유였는데 2012.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5. 2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G은 이 사건 계좌에서 J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2. 6. 11. 피고와 G, 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0. 5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D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해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K에 있는 L아파트 M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M동

1층 602.976㎡

2 내지 15층 각 581.556㎡ 4

노인정 및 관리실 165.426㎡

전기실 및 펌프실 426㎡

수위실 22.434㎡

공중변소 10.404㎡

지하 주차장 2839.45㎡

지하 대피소 2713.9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K 대 2254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84.9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864분의 54.042 끝.

